

(별지8)

이해상충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I.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II.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및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의 종류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
자산출루션본부 대체투자본부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투자운용본부 대체투자본부	투자자, 그 밖의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투자운용본부 대체투자본부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III.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거래주의 대상

1. 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2. 회사를 법 제133조 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 거래제한 대상 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회사에 의뢰한 경우

4. 회사가 거래제한 대상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법시행령 제201조 제1항 각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5. 계열회사 관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

1.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IV.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유형 및 대응방안

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이해상충의 문제 및 대응방안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다만, 아래 사항은 사전에 정의 되거나 알려진 이해상충 유형의 예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이 외에 다양한 상황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

이해상충 거래유형	거래유형 설명	이해상충 대응방안
임직원 매매	비밀정보 등을 이용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계좌개설 및 매매내역 준법감시인앞 사전 신고, 준법감시인의 사후 점검
선물 및 향응 수수	업무관련 이해관계자 등과 재산상 이익 수수 행위	준법감시인앞 수수내역 신고, 준법감시인의 사후 점검
집합투자 의결권 행사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한 의결권 행사	감독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결권 행사, 준법감시인의 사후 점검
대외활동	회사업무 이외 사적활동	준법감시인의 사전 점검
중개회사 선정	집합투자재산 매매를 위한 중개회사 선정	중개회사 선정기준 운영, 준법감시인의 사후 점검
사전자산배분	집합주문 시 집합투자기구별 배분기준 마련 및 동 배분기준에 의한 배분	사전자산배분기준 운영, 준법감시인의 사후 점검
집합투자기구간 거래	집합투자기구간 불공정거래행위	준법감시인의 사후 점검
집합투자업간 거래	집합투자업간 불공정거래행위	준법감시인의 사후 점검

V.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1.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방법

1. 사무공간의 분리
2.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기록 유지
4.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겸직금지(업무 통할을 위한 상시적 정보교류 임원의 지정은 가능)

예외적 정보교류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3.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5.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6.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유지·관리할 것

정보교류통제 담당조직 및 담당임원 등

1.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 준법감시인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 담당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